

보도 일시	2022.10.11.(화) 17:30	배포 일시	2022.10.11.(화) 16:30
담당 부서	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	책임자	실장 김진 (042-366-7101)
		담당자	사무관 문승태 (042-366-7102)

통계청-기초과학연구원 간 국가통계에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 구축 -

- 통계청(청장 한 훈)과 기초과학연구원(원장 노도영)은 11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 협력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-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▲ 위성영상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목표(SGDs)의 신규지표 공동연구 ▲ 인공지능 기반 자동분류 등 국가통계의 과학기술 활용 확대 ▲ SGIS, 영상자료, AI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.
-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통계 작성 분야에 발전된 과학기술 활용을 확대하고,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- 통계청은 인공지능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, 원격탐사 기반 경지면적 작성, SGIS 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지표 연구 등 국가통계의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,
- 기초과학연구원은 위성영상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인구밀도, 빈곤 지수, 도심 인구수별 녹지 면적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적 지표개발 연구를 해오고 있다.

- 한 훈 통계청장은 “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정확성 높고 효율적인 국가통계를 제공할 것이다.”며,
 - “이번 업무협약으로 인공지능과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SDGs지표 개발과 국가통계 작성과정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실효성 있는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-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은 “기초과학연구원은 위성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영상데이터 분석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.”며,
 - “양 기관의 협력으로 인공지능과 위성영상 분석 기술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과적인 통계지표를 개발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리라 기대한다.”라고 전했다.

-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은 위성 영상 등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방법론을 통해 SDGs 지표를 작성하는 공동연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.

- 붙임1. 통계청-기초과학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자료
- 2. 통계청-기초과학연구원 업무협약 전문

국가통계의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

기초과학연구원 - 통계청 협약체결식

▪일시 : 2022년 10월 11일(화)

▪장소 : IBS 행정동 대회의실



통계청, 기초과학연구원과 국가통계의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(왼쪽 한훈 통계청장, 오른쪽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)



국가통계의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

기초과학연구원 - 통계청 협약체결식



▪일시 : 2022년 10월 11일(화)

▪장소 : IBS 행정동 대회의실



통계청, 기초과학연구원과 국가통계의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
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
(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한훈 통계청장)

통계청-기초과학연구원 간 국가통계의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

통계청과 기초과학연구원(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.)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통계 방법론 연구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협약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분야)

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- ① 위성영상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의 신규지표 공동연구
- ② 인공지능 기반 자동분류 등 국가통계의 과학기술 활용 확대
- ③ SGIS, 영상자료, AI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
- ④ 기타 상호 관심분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

제 3 조 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조 (비용부담)

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분담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

- ① 협약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- ② 협약기관이 취득한 상대방기관의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 6 조 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.

제 7 조 (협약서의 효력)

-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합의 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8 조 (법적 구속력)

- ①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5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 쌍방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- ② 제5조(비밀유지)이외에 쌍방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제 9 조 (기타)

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협약기관이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.

2022년 10월 11일



청장 한 훈

원장 노 도 영
